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176호(號) 1927(昭和 2)년 8월 1일 월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246호(號)

1927(昭和 2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28호(號) 조선국유철도 화물운송규칙(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) 별표(別表) 화물특정임률표(貨物特定賃率表) 중(中) 1927(昭和 2)년 8월 5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27(昭和 2)년 8월 1일

조선총독 임시대리(朝鮮總督臨時代理)

육군대장(陸軍大將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내지발착(內地發著) 특정임률(特定賃率)의 부문[部] 면포(綿布: 무늬가 없는 물품[無地物]. 단(但) 고무를 교직(交織)하거나 또는 도포(塗布)한 것을 제[除]함)의 항(項) 발역(發驛) 오카야마(岡山)의 다음에 「이와쿠니(岩國), 오다(大島), 다부세(田布施)」를, 임률(賃率) 성선(省線) 내(內) 오카야마발(岡山發)의 다음에 「이와쿠니발(岩國發) 0.56」을 추가(追加)하고, 「야나이츠발(柳井津發) 0.53」을 「오다(大島), 야나이츠(柳井津), 다부세(田布施) 발(發) 0.53」으로 개정(改正)함.

동(同) 면포(綿布: 옷 한 벌의 옷감[著尺物] 및 고무를 교직(交織)하거나 또는 도포(塗布)한 것을 제[除]함)의 항(項) 발역(發驛) 야나이츠(柳井津)의 앞[前]에 「이와쿠니(岩國), 오다(大島), 다부세(田布施)」를, 임률(賃率) 성선(省線) 내(內) 오사카(大阪), 고베(神戸)의 다음에 「이와쿠니발(岩國發) 0.56」을 추가(追加)하고, 「야나이츠발(柳井津發) 0.53」을 「오다(大島), 야나이츠(柳井津), 다부세(田布施) 발(發) 0.53」으로 개정(改正)함.

성선(省線), 만철선(滿鐵線) 발착(發著) 특정임률(特定賃率)의 부문[部] 면포(綿布: 옷 한 벌의 옷감[著尺物] 및 고무를 교직(交織)하거나 또는 도포(塗布)한 것을 제[除]함)의 항(項) 발역(發驛) 야나이츠발(柳井津發)의 앞[前]에 「이와쿠니(岩國), 오다(大島), 다부세(田布施)」를, 임률(賃率) 성선(省線) 내(內) 오사카(大阪), 고베(神戸) 발(發)의 다음에 「이와쿠니(岩國) 0.56」을 추가(追加)하고, 「야나이츠발(柳井津發) 0.53」을 「오다(大島), 야나이츠(柳井津), 다부세(田布施) 발(發) 0.53」으로 개정(改正)함.